# (재)거제시희망복지재단 지원차량 관리지침

## 1. 배분차량관리 기본사항

#### 가. 적용범위

○ (재)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서 지원한 모든 차량

#### 나. 관리기간

○ 최초 지원일로부터 5년동안은 사업수행 기간이며, 사업수행 기간을 포함한 간 은 차량관리 기간으로 함

#### 다. 배분차량 주요 원칙

- 차량구입은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구입 가능함
- 사업수행 기간 동안 반드시 차량 종합보험 가입을 유지함
- 사업수행 기간 종료 이전에 매각(수출말소 포함) 및 폐기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함
- 차량관리 기간 9년 내에 임의 처분 시 대금을 환수할 수 있음
- 차량 폐차는 관청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만 가능함
- 도난 및 완파에 대한 보상금은 반납 처리 또는 차량의 재구입만 가능함
- 사업 수행기간 내에 재단 표시 로고 및 도색 변경은 불가하나 차량관리 기간 9년 이 경과한 차량은 재단 로고 및 도색 제거 가능함
- 지원된 차량은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만 운영하며 직원 출퇴근 및 사적 사용은 불가함
- 관련 법류 준수 및 안전 운행을 통해 지원 차량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

# 라. 배분차량 보고서 제출

- 사업수행 기간 5년 동안 연 1회 연간보고서, 반기 1회 차량운행일지 제출
- 사업수행 기간 5년 경과 후 차량관리 기간 4년 동안 연 1회 차량등록증 제출
- 연간보고서 제출 시 자동차보험가입증서 사본, 자동차 등록 원부(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), 차량 계기판 및 외부 사진 등 첨부

## 2. 사업수행기간 만료 전 차량관리

- 사업 수행기간 종료 이전에 매각(수출말소 포함) 폐기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함
- 차량 외장에 재단 지원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하며, 차량 인수 당시와 동일하게 외장을 유지해야 함
- 필요한 경우 (비공개 시설 등) 차량 외부에 수행기관명을 생략할 수 있음
- \* 사고 또는 변색 등 기타사유로 차량 도색이 훼손된 경우 신속히 복구해야 함

## 3. 사업수행기간 만료 후 차량관리

- 사업 수행기간이 만료된 차량의 경우 재단의 사전 승인 후 매각(수출말소 포함), 폐차, 반납 등 차량 처분 가능
  - 수행기관 자체적으로 차량 처분 불가
  - 다음의 관련서류 중 필요자료를 제출하고 재단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

관련서류

차량지원사업 서약서, 차량 사진(도색확인), 차량등록증, 차량감정평가서(또는 중고차매매버빈업체의 견적서), 차량정비내역서(또는 차량검사표, 차계부, 1급 정비사 소견서 등) 사본 각 1부.

# 4. 최초 지원일로부터 9년이 경과한 차량관리

- 9년이 경과한 지원차량의 처분 등 권리이양
  - 지원차량의 매각(수출말소 포함), 폐차 등 처분을 포함한 차량에 대한 일체의 권리·의무는 수행기관에 이양
  - 단, 매각(수출말소 포함)을 위해서는 '모금회 표시 및 도색 제거 확인 후' 처분

# 5. 어린이 보호차량 관련 유의사항

## 가. 관련법령

- 도로교통법 시행령[대통령령]
- 도로교통법 시행규칙[행정안전부령]

### 나. 유의사항

○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(2020. 11. 27 시행)에 따라 어린이

- 통학버스 운영시설의 적용 범위 확대
- -아동복지시설, 장애인복지시설, 사회복지시설, 사회복지관 등 포함
- 도로교통법 상의 어린이(만13세 미만)가 단 한 명이라도 통학 등을 위해 자동차를 이용한다면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구매
  - -옵션품목 안전벨 필수 선택 반영 : 법규사항
  - -기존 지원 차량도 법 시행 6개월 이내(2021. 5. 27.)에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으로 튜닝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
- ㅇ 어린이 보호차량 신고 필수
  - -어린이 보호차량은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
  - -기존 지원 차량도 법 시행 6개월 이내(2021. 5. 27.)에 어린이통학버스 요건(황색도색, 표시등 설치 등)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
-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의무 준수
  - -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 참조
  - (예. 통학버스 신고, 동승보호자 안전교육, 보호자 동승표시,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 등)